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모음집

2016. 3.

범 사회복지계

참여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 37개 단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은 사회복지계 37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 사회복지계에서 논의된 정책제안임을 밝힙니다.

Contents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I

선진복지국가 비전과 제안 1

II

3대 핵심 정책과제 5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민간복지 활성화 7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10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13

III

사회서비스 분야별 제안 모음 17

1. 아동복지분야 19
2. 여성복지분야 38
3. 노인복지분야 52
4. 장애인복지분야 65
5. 노숙인복지분야 69
6. 정신요양·사회복귀분야 71

[사회복지정책 제안 요약]

□ 공동의제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민간복지 활성화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사회서비스 분야별 제안 모음

1. 아동복지분야

- 1)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 실시하여 아동 차별 철폐<한국아동복지협회>
- 2) 국가 보호아동의 자립지원통합 추진으로 빈곤대물림 차단<한국아동복지협회>
- 3)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을 명시<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4)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배치<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5) 어린이 병원비에 대한 국가보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요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8)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확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9) 아동권의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국회 위원회 설치<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10)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11)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립<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 여성복지분야

- 1)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사무 추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한국여성복지연합회>
- 2) 한부모가족정책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수립<한국여성복지연합회>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별 검토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한국여성복지연합회>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복지급여의 적정한 집행<한국여성복지연합회>
- 5)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문성 확보<한국여성복지연합회>
- 6)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정비<한국여성복지연합회>
- 7)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구화<한국여성복지연합회>
- 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한국여성복지연합회>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강화사업 확대<한국여성복지연합회>

3. 노인복지분야

- 1) 노인복지 제도보완의 노인복지법 개정<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3) 초고령사회 예방적 복지로의 노인복지관 확충 및 기능·역할 재정립<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4) 재가노인복지 확대<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예방서비스 강화<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6) 장기요양기관 설립의 지역총량제 도입<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7)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한국노인복지중앙회>
- 8) 요양인력 기준에 대한 강화<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9) 노인일자리아업 전담인력 처우개선<한국시니어클럽협회>
- 10)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담부서 신설<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11) 민간 장기요양기관 연구 활성화<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4. 장애인복지분야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5. 노숙인복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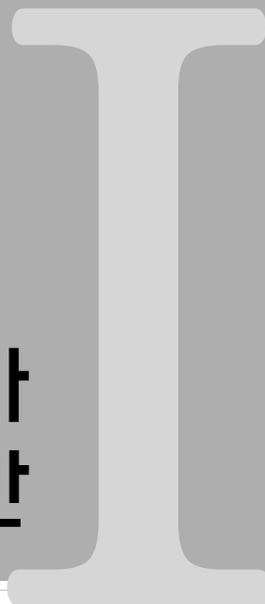
- 1) 노숙인 정책의 당위성<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6. 정신요양·사회복귀분야

- 1)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액<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건축단가 현실화<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3) 사회복지시설 확충<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4)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이분화로 인한 비의도적 차별 발생 해소<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선진복지국가 비전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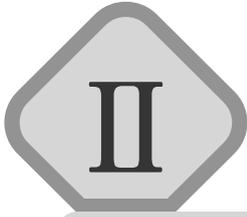


선진복지국가 비전과 제안

- 이제까지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 이제부터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 및 민간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을 위한 **민·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협력 구축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흡하여 아직까지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80%에 불과한 실정임. 노동 강도가 세고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에서는 '14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 실정임. 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과 복지전달체계 상에서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계와 협의·개정**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해야 될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함
 1.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복지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미흡으로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되어 서비스 전문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함
 3. 금년에 개정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은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육성·진흥을 도모하고,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전에 민간사회복지계와 **협의·조정**되어야 함

3대 핵심 정책과제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민간복지 활성화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3대 핵심 정책과제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민간복지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부문은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복지 국가 진입단계에 이름
- 사회복지부문의 성장과정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님.
- 2015년 7월 시행예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2014. 12. 제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조를 조망할 필요 있음.
- 특히, 공공부문의 확대와 함께 민간부문의 체계화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의 제시와 함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됨.

■ 개선 및 건의 사항

- 공공부문
 -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주민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분권화를 통한 지방이양사업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설치 등 다양한 전달체계 모형을 도입, 실시.
 - 공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정보화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복지급여의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에 대한 정책

- 체감도 개선 미흡, 민관협력 비활성화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는 개선할 여지 있음.
- 특히, 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보편적 조치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복지부의 정책집행력 약화, 지방 간 복지격차 심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중복,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함.
 -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책집행의 일관성 강화’가 요구됨.

● 민간부문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를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수가 급증함. 또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둠.
- 민간부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정부재정 의존성 심화, 사회복지시설의 준공공화로 자율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확장 및 질적 발전에 장애가 됨.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 협회가 설립되어 이익집단화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에 따름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조가 복잡함.
- 각종 협회는 해당 시설유형의 이익 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 종류와 양의 부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사회복지시설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복지체감도도 낮음.
-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한계임.
- 민간부문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각종 지원책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의·조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민·관협력

- 현행 전달체계에서 민·관협력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기초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으며(65%),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기구로서의 제도적 한계와 함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복지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로 복지다원주의 시대에 서의 민간자원의 개발 확대에 인하여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2014)>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은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약 82.3% 수준임
- 지역,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천차만별인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업무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무원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 보수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소규모 시설의 종사자 처우 문제 심각(예, 지역아동센터)

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급여 권장표)은 경력인정(호봉인정)과 승급이 불가능한 단순 지급기준임. 더욱이 운영지침 권장표에 적용된 기준은 '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중, 관리직(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보수체계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부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급여가 122만원으로, 지침상 권장급여인 147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공무원 대비 낮은 수준의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음
 - 연봉 총액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전담 공무원의 연봉총액평균은 3,734만원인 반면,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2,706만원,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3,199만원으로써 79%수준으로 낮음(「사회복지통계연감(20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시설내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및 이직에도 영향을 미침
-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은 사회복지서비스 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됨

[참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연봉총액 비교(세전)

(단위: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¹⁾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연봉총액평균 (표준편차)	3,116.97 (797.50)	2,645.58 (753.32)	3,702.86 (1292.95)	3,199.00 (837.96)	3,076.95 (889.49)	2,706.89 (915.63)	2,454.53 (870.68)	3,734.34 (1402.05)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통계연감(2015)」

1) 사회복지 생활시설 1,328곳, 이용시설 2,491곳을 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이 시급함⁷
-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직급간, 직위간 기본급 상승 폭을 확대하여, 보수기준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함

-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체계적 처우개선을 위해 소관부처별, 시설유형별 급여체계 통일화
 - 특히, 처우가 매우 열악한 소규모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여체계 통일 시급

■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의 임금, 노동시간, 근로형태 등 노동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제안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통제 및 규제 체계에서 육성 및 지원 체계로 개편
 - 민간사회복지를 규제 및 통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을 민간사회복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현행	전면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체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민간사회복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체계로 개편

- 민간복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국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민간사회복지서비스를 육성,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방향성 설정
- 민간사회복지 주체의 상호협력과 연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주체가 상호협력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심점 확보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확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과 일치시킴

■ 개선 및 건의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필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5호)」(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됨

-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변화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모법이면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이념과 목적, 기본원리, 사무자동화 등을 비롯하여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관한 계획법제, 조직법제, 자격법제, 지원법제, 작용법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었던 거대 실체적 기본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
 -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와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직법 체계만 잔존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의 지위가 무너짐
-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육성과 지원
 - 민간사회복지체계 구축
 - 공공부문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법체계가 되어야 함
 -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인력의 고유 역할, 적정처우, 자격제도의 보완 필요
 - 그 동안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종속적 대행자 관계’에 불과하였으나,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변모를 통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다양성을 통한 민간의 역할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규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필요
 - 민간사회복지 주체의 상호협력과 연계
 - 다양한 민간사회복지의 주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연계의 미비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한계 존재
 - 민간사회복지 주체들의 협력과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구심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 범위확대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가 모두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민간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국한되어 민간이 제공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돌봄, 정보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으로 확대됨

■ 기대효과

-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민간복지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민간과 공공의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음
 -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책임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확대로 새로운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을 구축하여 협력과 연계를 도출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별 제안 모음

1. 아동복지분야
2. 여성복지분야
3. 노인복지분야
4. 장애인복지분야
5. 노숙인복지분야
6. 정신요양·사회복귀분야



사회서비스 분야별 제안 모음

1. 아동복지분야

1.1.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 실시하여 아동 차별 철폐

〈한국아동복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보장시설인 노인·장애인·정신·아동시설을 지방 이양(노숙인시설 미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및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복지시설만 제외하고 노인·장애인·정신시설 운영예산은 지방에서 중앙환원하여 국고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음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만 차별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내 각 사회보장시설간* 형평성 문제를 정부 스스로 발생시키는 모순을 일으켰음
 - * 타 지역 주민 입소율 : 정신요양시설 30%, 장애인거주시설 42.7%, 아동시설 48.5%
 - * 수급자 비율 : 정신요양시설 84%, 노인양로시설 85%, 아동시설 100%
- 아동복지계에서는 2005년도 지방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코자
 - 서명운동·1인시위·항의집회·언론집중보도, 국회 결의안 통과(14.12월) 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동은 선거권이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예산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 등 17개 시도에서도 중앙환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만(설치율 55%)**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논란 발생

* 서울시의회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 통과('14.4월)

** 아동양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27개 시군구로 전체의 55%만 시설 설치, 없는 곳 102개 시군구(45%)로 특정 지자체에 편중 및 부담 발생 논란

■ 개선 및 건의 사항

-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시설인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시설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선거권이 없는 아동복지시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순과 차별을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중앙환원을 통해 해소하여 국민 통합 및 행복 추구가 필요

* 아동복지시설(전체 276개소)의 아동보호양육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지방 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 실시(관련 예산 약 2,500억원)

- 또한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 등으로 볼 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을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지원하여 우리 미래 세대의 육성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 될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중·장기적,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 및 다양한 아동복지 지원이 가능
- 전국적으로 지원 내용·항목·단가·산출내역을 통일하여 예산 지원 및 지역간·아동간 차별 해소
- 지자체의 타지역 아동, 지방예산 부족 등으로 인근 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동 입소를 반대 및 기피하여 타 지역 아동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음

참고1 지자체별 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 차별 실태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차별지원 현황('15.10월)

(단위 : 만원, 년)

시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서울	500	300
부산	500	전액
대구	275	200
인천	500	300
광주	400	-
대전	300	340
세종	500	-
경기	500	400
강원	100	- (강릉250)
충북	500	200
충남	500	최대500
전북	500	200
전남	300	100
경북	500	30~200
경남(울산)	500	-
제주	500	300

□ 2015년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차별지원 현황('15.10월)

(단위 : 천원, 월)

시도	과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3호봉	15호봉	3호봉	15호봉
서울	1,465	1,963	1,272	1,653
부산*	1,117	1,545	1,022	1,374
대구	1,958	2,735	1,653	2,371
인천	1,859	2,625	1,708	2,351
광주	1,866	2,889	1,681	2,404
대전	2,029	2,999	1,743	2,496
세종	2,029	2,999	1,743	2,498
경기	1,866	2,889	1,681	2,404
강원	1,804~2,029	2,790~2,999	1,652~1,743	2,360~2,498
충북	1,954	2,888	1,679	2,404
충남	2,029	2,999	1,743	2,498
전북	1,804~2,029	2,790~2,999	1,652~1,743	2,360~2,496
전남	2,029	2,999	1,743	2,496
경북	2,029	2,999	1,743	2,496
경남(울산)	1,764~2,029	2,697~2,999	1,641~1,743	2,384~2,496
제주	1,324	2,077	1,265	2,020

* 부산 : 정근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60~100%를 연 4회 지급

참고2 복지부 소관 사회보장시설 범위(아동복지시설만 중앙환원에서 제외)

구 분	시설종류	중앙환원 여부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2005년 지방이양	2015년 중앙환원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15년 중앙환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지방이양 계속 (중앙환원 제외)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2015년 중앙환원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2005년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하고 계속 국고지원

1.2. 국가 보호아동의 자립지원통합 추진으로 빈곤대물림 차단

〈한국아동복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가 보호하는 아동은 시설아동(14천명), 가정위탁(14천명), 공동생활가정(2.5천명) 등 31천명으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립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대부분 수급자 및 차상위 상태로 생활하고 있어 빈곤이 대물림 되고 있음
 - * (주거형태) 대부분 임시주거(정부지원시설, 친구집, 월세, 기숙사, 고시원, 친인척 등) 90.8%,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자가·귀가·전세) 9.2%에 불과
 - * (학력형태) 대부분 고졸 이하(중졸 포함) 62.3%, 대졸이 13.1%에 불과, 그 외는 대퇴·대휴·대재 18.9% 및 결측 5.7%
 - * (취업형태) 대부분 일시적인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직 65%, 일부 전문직 6.9%, 기술직 9.3%에 불과
 - * (소득형태) 대부분 150만원 이하 75%, 251만원 이상은 한명도 없음
 - * (퇴소 후 기초생활 수급여부) 수급자로 전락 22.9%, 그 외 차상위 등 불안한 자립 상태에 놓여 있음
- 민간자원과 연계한 후원사업이 다수

■ 개선 및 건의 사항

- 국가가 보호아동 실질적인 자립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 교육, 기술 자격, 취업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마련, 국고지원 하여 빈곤 대물림 완전 차단
 - (주거지원) 국가 보호아동의 대부분이 불안한 임시 주거시설이므로 안정적인 전세 및 임대주택, 전국적인 국가지원 자립통합지원시설 등 지원 확대 실시
 - (교육지원) 국가 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학 등에 입학 및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 및 대학 생활비, 자립계발비 등 지원 확대
 - (기술자격, 취업 등 자립지원통합) 평생 생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자격취득·기술습득을 지원하여 → 일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취업·창업지원을 통해 → 탈 수급 및 건강한 가정을 꾸려 빈곤 대물림 완전 차단

■ 기대효과

- 국가보호 아동·청소년이 퇴소 이후 사회구성원들과 어우러지며 성공적으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주거·교육·경제적 자립 가능
- 평생 생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맞춤형 전문 자격증 취득 및 기술습득과 취업창업을 지원하여 자립에 대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여 빈곤 대물림 완전 차단 가능
- 국가보호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진로의식 함양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미래 설계 및 평생 안정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생업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자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

1.3.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을 명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사회의 어린 시민인 아동은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로, 아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국가의 미래 보장 수준과 같음
- 헌법의 ‘국민’ 개념에는 ‘아동’이 포함되며, 아동도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재임
-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생애과정에 속한 노인과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의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이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현행(34조 4항)	개정안(34조 사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기대효과

- 아동의 대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아동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의 국가 책무 강화
 - 아동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아동 → 청소년 → 노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1.4.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배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 2014년 12월 기준 전국 4,056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9,311명이 법정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1기관 평균 2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수한 가정환경에 처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통합적으로 돌보고 있음
 - 아동 돌봄을 위해 주 5일 기준 시설장은 1일 9.6시간, 생활복지사는 9.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학교의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운영 등 주말 운영을 감안하면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5일 이상, 일 10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성장기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종사자의 질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므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다양한 업무(아동관리 및 상담과 급식, 교육 및 보호,

- 문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 지역자원의 개발과 연계, 행정, 회계 등)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추가배치가 매우 시급함
- 현재 지역아동센터 인력파견사업(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복지교사 1인 2개소 이상 파견, 평균 5시간 미만 근무, 단순 프로그램 강사 역할 등의 한계점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의 권한이 각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 업무분장 및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와 연계 파견 형태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의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이지 못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평가 되고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현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의 ‘지역아동센터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1인 추가 배치
- 법령상 ‘지역아동센터 인력배치기준’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 단시간제 파견인 아동복지교사사업을 1인 1기관 전일제 파견으로 전환하고, 인사노무관리에 권한을 지역아동센터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별표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현행			개정안		
			아동복지 시설의 장	영양사	생활 복지사	아동복지 시설의 장	영양사	생활 복지사
지역 아동 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2명	

■ 기대효과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질적 강화 도모
 - 전국 4,100개소에 이르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를 통한 아동에 대한 촘촘한 돌봄! 중단없는 돌봄 아동 최우선 돌봄 시스템 구축 가능

1.5. 어린이 병원비에 대한 국가보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병원비 부담조차 사회적 해결이 아닌 개인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더욱이 건강보험의 흑자가 지난해 13조원에 달하였고, 올해 역시 수조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흑자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어린이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병원비 문제를 사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 공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201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법정 본인부담) 총액은 55조원 규모였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12조원 규모임. 즉, 총 병원비는 67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건강보험공단이 41조원, 법정보인부담이 14조원, 비급여 본인부담이 12조원으로 총 환자 직접 부담 병원비 총액은 26조원 규모임
- 소아, 청소년으로 한정해서 볼 경우, 0~19세까지 본인부담금 총액은 3조 220억원 규모로 전체 연령 본인부담 총액 26조원의 12%에 해당하고, 0~14세까지 본인 부담금 총액은 2조 3,838억원 규모이며, 전체 연령 본인부담금 총액의 9%에 해당함

-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에 비해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액인 입원진료비(병원비)에 대한 국가 보장이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제도로 보임

■ 개선 및 건의 사항

- 어린이 병원비에 대한 국가보장제도의 도입
- 어린이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최대 재원은 3조원 규모이며, 실제 본인부담률이 크지 않은 외래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고, 입원중심으로 병원비 부담을 전액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6,309억원임

■ 기대효과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통한 미래의 더 큰 사회적 비용 절감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의거 아동기 발생하는 각 질병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 질병 등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사회적 추가 비용 절감 효과 기대

1.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요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생활복지사 우선)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운영 지침을 명시함
- 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경력인정과 승급이 불가한 단순 지급 기준임

- 운영지침상 단순 지급기준의 보수체계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합당한 대우가 아닌 무시하는 처사임
- 또한 생활복지사 우선이 아닌 시설장이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임
-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평균급여가 월 122만원에 그치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관련 종사자 보수비교 -

구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역자활 센터 (6급)	노숙인 시설 (생활지도원)	장기요양 기관 (요양보호사)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천원)	1,229	1,739	1,786	1,732	1,481	1,475	1,300	1,585
	* 전체평균 호봉미적용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명절휴가비)	1,477 (기본급) + 255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기본급+직 무수당+명절 휴가비+교통 보조비+식대 보조비)	(기본급+명 절휴가비)	(시설급여 월급) 7(재가급여 시급)	(기본급+정 근수당+정액 급식비+직급 보조비+명절 휴가비)

(출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회의 자료_2015.04.10)

-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따른 종사자의 급여수준도 월평균 122만원으로 '15년 정부 최저임금 116만원(시급 5,580원)에 가깝고,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급여 178만원의 69%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적용 및 준수

- 중앙정부·지자체 매칭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공통 적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증액 요구
-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단기 지원계획’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도 방법임

■ 기대효과

- 아동 복지시설의 운영 안정화 및 전문 종사자 유입 및 근로지속 유도
 -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기대
 -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아동복지 전문인력 유입 확대 및 지속 근로 기능을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1.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임(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2014년 12월 기준, 전국 4,059개소에 종사자 9,311명, 이용아동 108,936명(85% 이상 취약계층아동)이 종사 및 이용하고 있으며, 29인 이용시설 기준 법정 종사자 2인으로 월 436만원의 국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소규모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월 436만원의 부족한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아동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적 개선의 한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냉난방 및 차량운행비 부족 등 운영에 어려움이 높은 상황임
- 부족한 국가 운영비 보조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후원 및 자원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인의 법정 종사자 인력으로는 후원발굴 및 유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개선 및 건의 사항

지역아동센터 국가 운영비 보조금액의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화를 위한 중단기 지원방안 -

(계산식: 개소수×월지원금×12개월×0.48)

구분	'15년 지원 현황	'16년 지원확정액	'17년 지원 확대(안)	'18년 지원 확대(안)	'19년 지원 확대(안)
지원개소수 (추정)	4,113개소	4,113개소	4,150개소	4,200개소	4,300개소
지원단가	월 443만원	월 458만원	월 600만원	월 700만원	월 800만원
국비총액	103,520 백만원	108,505 백만원	143,424 백만원	169,344 백만원	198,144 백만원
증감	-	△ 4,985 백만원	△34,919 백만원	△ 25,920 백만원	△ 28,800 백만원

* 본 예산 추계는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로 거점·특목형, 아복교사, 지원단 및 평가 등 예산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 상기 표에 따른 단계적 지원확대(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 가능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아래와 같은 개선효과 동시에 이룰 수 있음

■ 기대효과

- 전국 최대 규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한 공적 아동돌봄체계 구축 기대
- 전국 4,100여 개소에 이르는 아동복지 인프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강화로 각 지역별 촘촘한 아동 돌봄 사회 구현을 기대



1.8.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확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91년 가입)에 근거해서 아동의 기본권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15년에 발표함
- 본 계획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10년 이내에 아동의 행복도를 OECD 평균수준 도달,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친화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원리로 아동친화도시 채택 및 추진이 확산되어야 함
-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unicef)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임(서울시 성북구 '13년 인증완료)

■ 개선 및 건의 사항

- 아동 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조례 제정
- 아동친화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핵심 원리로 채택하도록 아동친화도시 확대

■ 기대효과

- 아동정책기본계획과 함께 실행되는 아동친화도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구현

1.9. 아동권의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국회 위원회 설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가장 소외되는 집단이고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임
 - 현행 아동관련 예산은 GDP 대비 OECD 평균 2.2%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0.9% 수준이며 이 또한 보육 예산이 대부분으로 아동과 청소년관련 예산은 수치에 나타나지도 않음
 - 관련예산은 권익실현의 객관적이고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아동의 권익실현 수준은 최하위라는 조사결과의 반증임

〈표1〉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단위 : 원)

	한 해 1 인당 복지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전체 평균	2,545,000	139,000	60,000	1,204,000	720,000

* 출처 : 김미숙(201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사회복지재정DB에서 재분석.

- 특히 시설보호아동, 위탁아동, 입양아동과 같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비함
 - 이는 관련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보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임

■ 개선 및 건의 사항

- 헌법내 아동관련 주요 조항 배치와 아동예산의 법제화
 - 제도적 보안을 통한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수적임
 - 헌법 34조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은 국민 한사람의 권리주체임에도 배제되어 있음

- 아동 관련 조항이나 문구가 없기에 아동에 대한 예산, 특히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함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각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아동에 대한 항목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헌법에 아동에 대한 권리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 국회 상설 아동특별위원회 설치
 - 아동은 피선거권이 없어 예산에서 가장 소외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확보하는 단위가 없음
 -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은 현재 아동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
 - 이익단체의 성격을 배제하고 아동권익을 위한 아동복지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사회적 활동 실시
- 아동예산의 법제화 : GDP의 2% 내외 정액 배정
 - 고령화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아동에 대한 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명시하고 세부사업별로 재배분하는 정책과 예산 수립
 - 분산된 아동예산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아래 세부사업별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아동예산 증액

■ 기대효과

- 제도화를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예산 수립이 가능
- 새로운 대안수립과 실질적으로 아동권익을 대변할 수 있음

1.10.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 그룹홈 증가추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2004년 104개소(첫 신고)
 - 감소 : 489개소(2012) → 480개소(2015)
 - 현재 가정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그룹홈 개소 수 : 3,000여 개소
- 종사자의 고령화(신규유입 정체)
 - 20~30대 : 18.5%
 - 40대 : 30.7%
 - 50~60대 : 50.8%
- 종사자 만족도의 저하
 - 매우만족 : 1.5%
 - 만족 : 19.8%
 - 보통 : 38.8%
 - 불만족 : 39.9%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질적 보호체계의 절멸. 관리와 시스템만이 남는 통제위주의 시설화로 귀결
- 종사자 처우 열악 → 종사자 유입저해 → 그룹홈 몰락 → 아동보호의 질 저하 → 국가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 비관적 전망

〈'15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실태 현황〉

(단위 : 원, 년, 호봉)

구분	시설장		보육사	
	조사결과	2015년 급여	조사결과	2015년 급여
평균 근무기간	4.4년	20,195,000원 사회보험료, 퇴직금제외 실월급여 평균 1,450,000	2.3년	직급구분 없이 상동
평균 호봉	6,8호봉		3,2호봉	

- 실질적으로 2교대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역시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요구
 - 현재 직급, 근무시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월 10시간 기준 종사자 1인당 121천원 지급되고 있음(개인시설의 시설장 미지원)

■ 개선 및 건의 사항

-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동일 처우(호봉제) 적용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처우 조항 삽입
- 그룹홈 종사자 보수 지급방식도 생활시설 종사자와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그룹홈이 '04년에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된 점을 고려하여 '16년도 호봉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함
- 최근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의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시설간 종사자들의 처우가 비슷해야 하므로 호봉제 도입이 시급함 (보건복지부가 2015년 2월에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이행 필요)

■ 기대효과

- 요보호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및 해당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 처우 보장을 통해 아동 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 도모 가능함
-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설보호로의 복귀라는 후퇴를 막고 발전된 보호체계를 유지, 확산
 - 외국에는 이런 좋은 보호체계가 없어 추후 타국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1.11. 그룹홈 중앙지원센터의 설립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아동관련 단체에 중앙지원시스템이 설립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그룹홈의 경우에만 중앙지원센터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및 건의사항

- 아동청소년그룹홈 중앙지원센터의 설립

■ 기대효과

- 타 아동보호체계와 같은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보로 아동보호의 질 향상

2. 여성복지분야

2.1.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사무 추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따른 가족 관련 직무에 대하여 건강가정(2004년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다문화가족(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의 사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한부모가족’(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의 사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15년도, 2016년도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기능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이 보이지 않고 기존의 가족정책보다도 후퇴하는 모습이 보임
 - 일본에 있어 장기적 경제침체의 기본적인 원인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다는 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가족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인구 구성에 있어 여성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비율은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음
 -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지원을 본격화하여 지원 및 수련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반해 한부모가족정책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 위상이 추락한 실정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총체적으로 유형별 가족정책이 재정립 되어야 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하에서 한부모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서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6~2020)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만 있어 이전과 달리 진전있는 계획이 보이지 않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정부조직법내에 여성가족부 직무에 가족정책의 근간인 한부모가족 관련 사무를 명시하고 독립적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정책 위상 제고 및 한부모가족정책 중요성 표명

2.2. 한부모가족정책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수립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가족정책은 건강가족분야, 한부모가족분야, 다문화가족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기존의 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년 건강가족기본법이 제정되어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건강가정’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 가족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됨
- 그러나 전체 가구수 대비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유자녀가구의 18.4%에 도달할 정도로 지속적 증가 추세로 혼인한 여성의 출산율은 OECD평균이라는 점, 그리고 저출산율 문제의 핵심은 결혼자체를 안하거나 늦추고 있다는 점, 특히 향후 청년세대의 1/3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리라는 전망은 건강가정정책이 한부모가족정책과 분리·독립되어 각각의 분야가 독립되어서 균형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줌

-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임

■ 개선 및 건의 사항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가족정책의 근간으로 한부모가족정책의 독립적 위상 확보가 시급함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중심 직제에서 탈피하여 ‘한부모가족정책과’의 신설로 한부모가족정책 업무의 위상 제고
-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효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의 독자적인 수립이 요구됨
 -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강가정기본계획내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비중있게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법이며, 내용적으로도 한부모가족과 크게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계획내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정책 위상 제고에 따른 확대, 체계적인 정책 추진

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별 검토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법 제정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생계보호와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후 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면서 기본생활지원형은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한정됨
 -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체 저소득 한부모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제한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생활시설로, 한해 전체 저소득한부모 중 2% 정도만이 시설에서 생활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급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한부모가족에게 적합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데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별 시설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여 법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시대변화에 따라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경우, 가정불화, 경제적 위기, 응급 미혼모의 출산 등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노숙과 자녀유기 등 가족해체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함
 - 또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출산·분만 지원, 산후 조리지원, 초기 양육지원 등의 전문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토록 해야 하며,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시설 또한 영아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과 종사자 수 검토가 시급함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문성 명시 및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 마련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복지급여의 적정한 집행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법 개정으로 의무조항이 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음
 - 생계비는 ‘생활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에게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
 - 교육지원비는 ‘학용품비’로 중·고생 자녀에게 연 5만원 지급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정 당시에 신설되어 의무조항으로 개정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① 법에 명시된 생계비를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만,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데 양육비 지원나이를 임의로 만 12세로 한정된 것 ③ 교육 지원비도 초등생은 제외하고 중·고생에게만 낮은 금액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공적부조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확대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교육 지원비는 유명무실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개선 및 건의 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복지급여의 적정한 지원 및 집행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의 현실적인 생계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2.5.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양육비이행 관련사업 등은 취약·위기의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취업교육비 등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법률문제 등 정보 제공, 통합적인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대체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중요한 주요업무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라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음에도 상담소를 활성화하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조례상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에서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은 법리적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화된 가족형태중 청년실업, 이혼증가, 독거노인, 경제양극화로 급증하는 1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재난과 질병, 사고 등의 위기 가족들에 대한 시의 적절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재가 및 시설 한부모들의 심리·정서적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현실에 보다 접근성이 높은 전문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체계구축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주체들이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체계화, 효율화하여 한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상담소 운영이 필요함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2.6.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부재가 심각함
 - 한부모가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전문서비스 등은 시설 퇴소 후, 혹은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다 접근성이 높은 상담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전달체계가 필수적임
 - 시설 거주 한부모들의 거주기간은 일시적이고 퇴소 후 자립적 생활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므로 재가 한부모가족을 향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시급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그 동안 가족지원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운영되어 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법적 전달체계가 아닌 동사무소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산발적으로 시행
 - 동사무소는 긴급한 저소득층 한부모의 생활지원에만 한정되어 있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상담 및 기타 생활지원은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 중 하나이고, 그나마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많지 않음

-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양부모가족보다 어려움이 많은 한부모를 위해 적합한 사업들을 더 많이 진행해야 하지만, 생계와 육아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부모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어, 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이 나타남

- 또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하므로 복지시설, 상담소, 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필요함

- 이러한 전달체계는 정부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한부모시설이나 한부모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정부의 서비스 전달에는 한계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또한 한부모지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존재하여 한부모가족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한부모가족에게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성격이 전문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재규정 되어 절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서비스 지원전달체계의 고유한 성격으로의 기능 재정비를 하여 범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시급히 활성화시켜 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최초 접수창구로 활용해야 함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 수 등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 확보
 - 한부모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은 전문성과 효과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우선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 기대효과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을 정비하여 법취지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재가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전국적 확대

2.7.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구화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부터 시작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은 2014년 3월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년에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관련 상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2015.3.25 시행)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에게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아동들을 올바르게 안정감있게 양육하는데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임
- 위 법에 근거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는데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법 체계상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본 업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5.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에 의거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조직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또한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야 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에 설치하여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건강가정의 사업들과 함께 수행됨으로써 한부모가족 서비스에 있어 전문성의 질적 저하와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2012년 한부모지원법 개정안 공표에 따라 2013년 3월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4.6%로 매우 낮았으나, 소송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44.5%로 나타나고 있음. 즉, 자녀양육비 소송 경험이 없거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이용 경험은 2.5%로 매우 적었고,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결정사항(복수응답)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 7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행명령’이 47.1%였으며,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자의 37.8%는 절차 이용이 양육비 수급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32.5%가 절차 진행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에 의하면 전체 한부모가족 중 사별가족은 30%정도를 차지하며, 100만이 넘는 한부모가족은 전혀 양육비청구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본단위에서의 서비스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단위 : 1,000가구, %)

연도	총 가구수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7.4
2000	14,312	502(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9.2

■ 개선 및 건의 사항

- 입법취지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 하나의 업무 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구로 분리해야 함
- 지역적으로 1차적인 접수창구 역할을 할 전달체계 활성화 시급
 -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한부모가족 서비스전달체계상의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를 통해 정보제공, 안내, 상담 및 지원에 대하여 지역적 창구로 활용

■ 기대효과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정감있는 양육환경 조성 도모
- 전달체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 안정성 확보

2.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한부모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립기반의 필요성이 높아 2010년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를 지원하며 자산형성계좌지원을 2010년 가입자에 한해 2015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은 청소년한부모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이 현재 중단되고 지원도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임

■ 개선 및 건의 사항

- 취지에 맞게 신규가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에 따라 자산형성계좌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자산형성계좌가 청소년한부모의 자활의욕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인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원 조건들을 재검토한다면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기에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사업 재개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

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강화사업 확대

〈한국여성복지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가. 시설종사자교육, 나. 한부모가족복지 세미나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워크숍으로 구분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실시 해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체교육을 통하여 한부모가족복지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능력 향상,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케 하고자 반기 1회 이상 시설 종사자 교육 개최
 -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의 주요시책 고찰 및 평가,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부모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사업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 세미나 개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전반을 검토하고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워크숍 시행
- 이후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삭제됨
- 동일한 가족정책분야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은 법적조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①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매뉴얼 개발 ② 직원교육 ③ 시설지원사업이 인력과 운영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고 있음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와 같이 법률상 위탁사업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① 가정 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② 연구, 조사 ③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④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시설 및 단체들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관련시설 및 단체들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대한 인력과 운영 등의 관한 예산이 편성 시행되지 않아 현실성은 물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고, 지원예산도 대단히 미흡할 뿐 아니라 그 사업내용에 있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공모’를 통해 경쟁토록 하고 있음
- 타 공모사업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국은 10억 2,400만원, 권익증진국은 2억 4,300만원, 가족정책관에서는 가족가치 확산 공모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의 경우 단일주제임에도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다문화사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1개 사업의 최대 예산규모가 5천만원임
- 2015년도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가족정책관실 공모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구 분	2014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안
여성정책국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1,169	1,024
권익증진국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500	243
가족정책관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	400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1,300	1,300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시설서비스 역량제고	54	54

■ 개선 및 건의 사항

- 2015년에 신규 조성된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에 한부모가족 분야를 집중하여 편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 동안의 한부모가족시설 서비스관련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 시설내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직원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 노인복지분야

3.1. 노인복지 제도 보완의 노인복지법 개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독립된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규정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근거]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와 관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인력 및 예산체계 등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종합적인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문성 담보를 위한 인력, 예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함
-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급증에 따라 독거노인지원사업을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령도 아닌 지침수준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개선 및 건의 사항

- 노인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규정
- 독거노인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개선 및 건의 사항

- 노인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써 실제적 기능과 역할의 법적지위 확보 및 행정 완료
- 법적지위에 근거한 행정 및 예산 확보로 사업 안정화·지속화 가능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16년 노인일자리사업량은 약 387,000개이나, 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니어클럽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전국 229개 지자체중 120개(52%)에 불과(109개 시군구 미설치)
 - 특히 지속적인 고용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간분야(시장형)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전국규모 네트워크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의 한계로 작용
- 전국 기초지자체 시니어클럽 설치현황

2015. 12. 31 기준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시군구	229	25	16	8	10	5	5	5	18	31	11	15	14	22	23	18	2	1
시니어클럽	120	7	16	8	1	5	5	2	12	15	7	7	10	4	12	7	2	0
비율(%)	52	28	94	100	100	100	100	40	67	48	64	47	71	18	52	39	100	0

■ 개선 및 건의 사항

- 시군구 당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 의무화
 - 시군구 당 시니어클럽 1개소 이상 설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향상 도모

■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사업(특히 민간분야) 활성화에 기여
 - 우수한 노인일자리사업 모델 발굴 및 발굴된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 규모의 사업추진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노인 소득 증대에 기여
- ◎ 지역간 정보교류를 통한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에 기여
 - 지역간 또는 유사업종간 정보교류를 통해 각 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계약에 관한 사항]

■ 문제점 및 현황

- ◎ 치매 독거노인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의 특징 중 하나는 계약 당사자와 서비스이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음
 - 현재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이 없거나 계약 대리인이 없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향

- ◎ 치매 등의 이유로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가족 및 친지가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 및 대상자의 신상보호 영역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 의사불능 대상자에 대한 계약의 리스크 감소
- ◎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분쟁에 대한 사항]

■ 문제점

- 현재 요양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요양 시설 등에서는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접 보험사 또는 해당시설을 상대하여야 하므로 이용자 자신의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개선방향

- 이용자의 권리보호, 고충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장기요양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를 통한 이용자의 권익 보장

3.3. 초고령사회 예방적 복지로의 노인복지관 확충 및 기능·역할 재정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2015년 현재 344개소임(보건복지부, 2014)
 - 등록회원은 약 150만 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약 22만 명. 이는 65세 이상 노인 2.1만 명당 1개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 당 1.2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음

● 문제점

- 720만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증가와 다양화, 복잡화 되는 서비스 대응 필요
- 현재 지방자치단체 당 1개소는 2.1만 명의 과다한 이용노인으로 인해 서비스 질과 만족도 담보불가 및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이용노인이 60대부터 90대까지 매우 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 개선 및 건의 사항

- 노인 1만 명당 1개소 노인복지관 확충, 680개소의 설치를 목표 (현재 344개소 → 향후 680개소)
-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기대효과

- 1만 명당 복지관 1개소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통한 예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21세기 활동적 노후를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가능

3.4. 재가노인복지 확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문제점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현 시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체계는 그 동안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은퇴노인 및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여가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소규모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시설로써 그 동안 저소득 노인 및 심리·정서적으로나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의 경우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 그러나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복지기관으로 자리 잡기에는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범위, 인력기준, 서비스의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음
-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노인 복지의 근간으로 그 동안의 한정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노인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향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법적근거와 운영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 이를 기초로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서비스 제공기준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 신속성, 용이성 등의 확보 등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에 대응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3.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예방서비스 강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외자에 대한 예방적 필요성에 대한 욕구 증대
 -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큰 제약이 됨
 -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노인에 대한 예방적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프로그램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실행체계기본 모델로 하는 노인복지법에 근간한 재가노인복지 시설로 지역사회 소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속적 사례관리, 노후건강증진, 노인권익증진, 주거안전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기대효과

- 노인의 건강 악화 예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 등외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건강악화를 늦춰 건강한 노년생활 유지로 장기요양보험 진입을 늦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각지대 노인 발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 생활, 경제적 악화를 예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유지 기대

3.6. 장기요양기관 설립의 지역총량제 도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기관설립의 지역 총량제 도입]

■ 문제점

-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제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감소 추세에서 201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임
- 이에 따라 현재 지역의 방문요양 시설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기관의 난립으로 각종 부당행위가 발생되고 있음

■ 개선방향

-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별 적정 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가장기요양시설도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여 시설 수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방문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지역을 거주 지역으로 한정하여 거주 지역 이외의 곳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장기요양 시장질서 확립
- 지역사회 노인문제 방지 및 완화

3.7.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유사 직종에 비해 열악한 편임. 이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임금보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2015년 양로시설 예산에서 6.5% 인상된 예산지원으로 적정한 인건비 지급과 물가 인상 등의 요인을 포함한 운영비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임금 인상으로 유사직종에 준하는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또한 교육시간 인정확대, 현실적인 병가일수나 경조사 휴가일수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함

3.8. 요양인력 기준에 대한 강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이후 2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이며, 재가장기 요양시설이 증가한 만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됨
- 그러나 종사자 전체인력의 약 95%를 요양보호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 요양제도에서 단순 요양서비스 제공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문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구성이 필요하며 종사자 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선방향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제안되곤 함. 즉,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 또는 간호 인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자원동원을 통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
-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서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측면에서 운전원, 조리원 등의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재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정립되어야 함
- 현재 직원의 공단 인정교육에 협회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설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상근의무 등의 사유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종사자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이를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장기요양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3.9.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 및 질적 향상 저해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에 각 기관에 참여노인 136명당 1명의 전담인력 지원(월 116.7만원×11개월)
 - ※ 2014년말 기준 전체 수행기관 전담인력 누적인원 2,276명
 - 전담인력의 급여는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사무직 4급 1호봉 157.1만원 대비 74% 수준임
 -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담인력 처우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선정
 -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어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여 사업의 연속성 저해(실수령액 약 95만원, 퇴직금 지급 제외(11개월), 지속적 고용 불가)

■ 개선 및 건의 사항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급여 개선
 - 동일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인력 중 시·도 전담인력 처우(12개월 근무, 월 170만원)의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

■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사업 질적 향상에 기여
 - 노인일자리사업 중요 인력인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은 전담인력 당사자 근로의욕 향상 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3.10.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담부서 신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체기관에 따른 전담부서의 개별관리가 필요함. 현재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자는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관과 순수개인 자본으로 설립된 개인 운영기관으로 양립되어 있다. 또한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구분없이 일원화로 관리하여 제도와 정책에 차별을 주지 않아 재무회계 규칙 등 여러 제도에서 혼란을 자처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의 전문장기요양기관과 순수 개인자본의 전문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및 부서의 이원화가 필요함. 현재는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사회복지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지만 설립에서부터의 차이가 있는 두 설립 주체를 각각 전담 담당자에게 관리하게 하고 정책에서도 분리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함

■ 기대효과

- 앞으로 확대될 장기요양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장기요양제도의 세밀한 부분을 직시하여 사회복지법인기관과 개인기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완성도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을 만들 수 있음. 또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음

3.11. 민간 장기요양기관 연구 활성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시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학회의 필요성. 현재는 법인시설위주의 학회로 구성되어 개인시설의 연구가 부족하고 개인시설의 연구가 활성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개인이 설립한 시설들이 서비스와 제도발전을 직접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개인시설 전문 노인장기요양연구소를 만들어야 함

■ 기대효과

- 개인시설의 연구 참여와 제도 건의를 통하여 현장지식과 내부자료가 없는 일반연구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민간 장기요양 시설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연구를 통한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경쟁력 강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장애인복지분야

4.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실적이지 못한 서비스 단가
 - 유사 돌봄 서비스에 비해 비현실적인 서비스 단가 산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표 1〉 유사제도간 서비스 단가 비교

구 분	활동지원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일상+사회)생활 지원	노인의 일상 (가사·활동, 주간보호) 지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간병+가사지원) 도모	출산가정 산후 관리 지원	일생(신체+가사활동) 생활 지원
시간당 단가	8,810원	9,800원	9,500원	최대 800,000원 (12일)	43,500원 (4시간)
인건비 (시급)	6,610원	7,425원	7,125원	6,818원	7,440원
활동지원 대비 인건비 비율	100%	112%	108%	103%	124%

* 출처 : 2015년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 자료집(Ⅱ)

-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 확대
 - 장애인 이용자
 - 2016년 서비스 단가가 9,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유형(성별, 나이 등)의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원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움
 - 근로기준법에 의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과 맞물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이 어려운 상황

- 활동보조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제공받아야 할 각종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과 5대 보험적용, 퇴직금 지급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당한 법정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 활동지원기관
 -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당한 법정수당 지급이 어려워 형사 및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커지고 적자 운영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서비스 단가 현실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의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단가를 10,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서비스 단가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 추경에 우선 반영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1차적 책임 주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완성도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통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안정적인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 도모
- 서비스 질 관리(Quality Control) 향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도적 안정성 향상

4.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 심화
 -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계는 67개 사업에 대한 선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적인 시설배치 및 지방비 의무 부담기피 등으로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나 지방이양 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가 심화
 - 특히 장애인복지계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으나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업은 중앙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가중
 -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

■ 개선 및 건의 사항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필요
 - 최근 새로이 추가된 사회복지분야의 여러 가지 국고보조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의 매칭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 분권교부세가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책임분담 요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Social Safety Net)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단계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앙환원 필요

■ 기대효과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완화 및 지역간 복지격차 감소
- 지역별 상이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5. 노숙인복지분야

5.1. 노숙인 정책의 당위성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노숙인복지시설의 유형별 정체성 모호
 -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존 노숙인 및 부랑인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재편됨
 - 재편된 시설유형별 정체성이 기존 생활인들이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법 제정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음
 - 오히려 입소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행정적 불편함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차별받는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중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될 때에 유일하게 중앙정부 사업으로 잔존시켰던 사업이 ‘부랑인(현재 ‘노숙인’으로 용어 및 대상 통합)’ 복지 분야임
 - 중앙정부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처우는 오히려 지방이양된 타복지 분야 대비 더욱 열악해지고 심지어 처우 수준이 80% 수준에 머물러 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현장이탈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생김
- 장기입소자의 노령화
 - 사회복지가 불가능한 장기입소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노령화 및 재가독거 노령장애인 등의 신규입소자의 증가는 서비스의 질과 종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함
- 사회복지 등의 자립 위주의 프로그램에 맞춰진 운영비 책정으로 다양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장기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

■ 개선 및 건의 사항

- 노숙인복지시설의 유형별 정체성 확립
 - 각 시설 유형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각 시설 유형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인력 투입
 - 기존 시설의 기능개선은 물론,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 노숙 발생원인 및 유형에 따른 입소절차의 다변화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정상화
 - 노숙인복지시설 인건비 기준과 중앙화된 타 분야(장애인, 정신, 노인)와 동일 기준 적용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최소인력 배치
- 노숙인복지시설의 개념을 노숙인종합복지생활(거주)시설로 전향적 접근 필요(일반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상호보완적인 의미)
 - 자립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제공보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와 질병을 가진 장·노령층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필요
 - 외적 거주지는 있으나 관계망 단절에 따른 내적 안전망(가족)의 부재를 겪고 있는 독거장애인 또는 장·노령층 고독사 방지

■ 기대효과

- 노숙인복지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시설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적 서비스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음
 - 시설 생활인의 건강과 특성에 맞는 기능적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음
 - 입소단계에 있어 다각적 접근은 명확한 사정을 담보하여 향후 이어질 시설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효과를 배가시킬 것임
- 차별없는 종사자 처우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본적 요소
 -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처우 격차가 해소되면 종사자의 현장이탈이 줄어들어 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처우 불만으로 인한 이직과 퇴직에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막아 업무 효율에 이바지 함

6. 정신요양·사회복귀분야

6.1.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액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정신요양 3개 사업에 대해 2015년 국고사업으로 전환(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9.23.)
- 최근 2년간(14년~15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동결로 인상 필요
- 2016년 정부예산안, 국고환원 3개 시설 지원단가 1.3% 인상에 그쳐
- 동일 시·도, 동일(유사) 사업인 아동양육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2016년에는 5.5% 격차 발생 우려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 상승
-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 준수를 강요하나, 복지부는 미 준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매년 제시)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한 1.3% 인상인 반면, 공무원 임금은 3% 인상(1.3% 근거 모호)

■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단가인상 1.3% 외에 추가 인상 절실 (1.3%인상에서 5.5% 추가 인상, 1.3%→6.8%)
- '15년 예산 대비 50억원(6.8%) 증액 필요
 - 종사자 인건비 인상 : 44억원 증액
 - 관리운영비 인상 : 6억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 인상요구액

(단위: 억원)

시설유형	2015년예산	증감 1.3%	2016년 정부예산안	추가증액요구액 (5.5%)	비고
정신요양 시설	725	9	734	50	- 단가 5.5%인상 44억 - 운영비 6억

6.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건축단가 현실화 확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도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단가는 1,127,000원/㎡으로 물가상승율, 건축자재가격 상승, 환율상승, 2004년도 건설교통부 표준 건축비 1,279천원/㎡ 에도 미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국고 지원 건축비 지원 단가 및 총 건축비용이 낮아서 입소·이용인의 접근성, 편의성 고려 및 지역사회 친화적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건축비 지원 금액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있는 현실임
 - 각종 사업안내 기능보강사업 추진 세부내용 발췌

설계 및 공사집행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원칙적으로 전자공개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생활 시설의 기능보강 건축단가가 전자공개입찰을 위한 m²당 최소 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전자공개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2016년 국토해양부 표준건축비 1,762천원/m²(고시 제2015-1013호)
 - * 주요 공공시설 평균 공사비 사례 (출처 조달청/사례 2013년 기준)
- 낮은 단가로 인해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
- 주요 공공시설 평균 공사비 사례

(출처 조달청/사례 2013년기준 / 2014년 발표)

구분	건축단가 (원/m ²)	구분	건축단가 (원/m ²)	구분	건축단가 (원/m ²)
일반청사	2,287,000	지구대	1,737,000	기숙사	1,942,000
대형청사	2,826,000	우체국	1,971,000	노인복지시설	2,249,000
경찰서	2,120,000	전시시설	3,044,000	의료시설	2,217,000

※ 2014년도 조달청 공공시설 평균공사비 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설비 설치로 가장 건축단가가 높았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안전설비는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건축단가 현실화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단가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16년도 표준건축비(1,762천원/m²) 수준으로 인상하여, 정신요양시설 신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는 건물구조로 개선하도록 지원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 증·개축 등)사업의 지원단가는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지원단가로 지원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지원 단가를 차별화하는 탄력적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현실화를 통해 적정 규모를 산정
- 전체 건축비 지원규모를 시설 정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형편에 맞게 지원함과 동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2~3년의 계속사업으로 확정해 지원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 2014년도 기 확정된 정부예산안의 기능보강사업비 총액을 변경(추가)하지 않고, 건축비 단가 조정을 통해 건축비 인상안이 반영돼야 함
 - 신축비 단가인상 : 1,127천원/㎡ → 1,762천원/㎡ 인상 요구함

6.3.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정신질환자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부족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13,964병상(2013년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 83,001병상(2013년도 말 기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재원기간 176일(2013년도 기준)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정원 약 4,275명, 입소(주거)정원 2,340명(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 불과함

■ 개선 및 건의 사항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확대 및 활성화
 -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신의료병상의 증가와 장기입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체류 현상은 아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비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 때문임. 따라서, 원활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탈원화와 재입원방지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즉 긴급 의료 조치가 필요 없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의 지역생활
 - 정신질환자의 지역생활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헌법의 생존권에 부응하게 됨

6.4.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이분화로 인한 비의도적 차별 발생 해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이분화로 인한 비의도적 차별 발생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있으며,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립 정착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보건법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자립생활지원,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이분화된 체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일부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

■ 개선 및 건의 사항

- 비의도적 차별 발생의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와 특성화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사회의 일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 이를 통하여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 시설의 다기능화와 특성화가 필요할 것임
 - 정신장애 분야에서도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립생활지원 제도와 탈원화를 통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제도가 필요함

